

수신자	동대문구청 도로과장
제목	제3종시설물의 해제통보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귀하께서 소유(관리)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3종 시설물로 해제하오니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하였습니다 고시합니다.

대상 시설물		해제사유	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	해제일자
시설물 명칭	소재지			
배봉초등학교앞육교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00 (전농동)	철거후 재설치	해당사항없음	2020.1.10

**서울특별시**